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. 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. 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                     2. <a href="#"><u>트러스톤 재형 다이내믹 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a></p>
<p><b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.~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<b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.~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6. <a href="#"><u>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들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</a>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a href="#"><u>부칙</u></a>  <a href="#"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a></p>